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및 해당 시설에 입소한 노숙인 자료,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 자료 등을 추가하여 세원(稅源)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업주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 신고 자료의 제출시기를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및 10월 31일에서 매월 말일로 개정하여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보건복지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2. 1. 7. ~ 1.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2호의 제출시기란의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매월 말일

별표 제9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결제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금융회사의 대금결제자료 나.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전자금융업자(금융회사 포함)의 대금결제자료	국세청	가. 매월 나. 매월 10일
----	---	---	-----	---

별표에 제124호부터 제12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4	보건복지부	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에 관한 자료	국세청	매년 1월 10일 4월 10일 7월 10일 10월 10일
-----	-------	--	-----	---

		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숙인에 관한 자료		
125	보건복지부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관한 자료	국세청	매일
126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건강보험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관한 자료	국세청	매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2호, 제92호 및 제124호부터 제12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226